[미래에셋증권]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최선집행기준 설명서

제정 2025.02.04

이 설명서는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7조의3 및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하 "상품")의 매매(영 제6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는 제외)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거래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Ⅰ. 최선집행의무(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의무) 관련 주요 용어

1. 통합호가와 주문유형

가. 통합호가란 고려대상 시장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를 의미한다.

※ 고려대상 시장이란?
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1개 이상의 거래 집행시장으로 거래소, ATS(대체거래소, 즉 법상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의미한다.

나. 주문 유형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Order Book) 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말한다.
* (예시)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은 기존 물량 체결 주문에 해당한다.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란,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창내 신규 대기 물량을 조성하는 주문을 말한다.
* (예시) 지정가주문(Limit Order, 투자자가 대상 증권의 가격과 수량 등을 지정하게 되는 주문) 중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은 신규물량조성주문으로 남게 된다.

2. 최선의 거래조건 관련 용어 (영 §66의2② 관련)

가. 상품의 가격

1)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이란, 투자자의 상품매매를 위한 통합호가창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한다.
2) 회사는 공개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공개호가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1)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중 주문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는 명시적 비용을 의미하며 이하 “거래비용”이라 한다.
2) 암묵적 비용이란 사전적으로 요율이 확정된 명시적 거래비용 외의 비용(시장충격비용 등)을 의미한다.

다.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한다.

라.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하 ‘거래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금융투자상품매매의 반대급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총비용 또는 투자자가 수취하는 총대가를 의미한”다.
1) “총비용”이란, 매수주문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수금액으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의 합*”으로 한다.
* 매수시 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
2) “총대가”란 매도주문 시 투자자가 수취하는 가격과 비용을 고려한 총매도금액으로 “매도금액과 거래비용의 차*”로 한다.
* 매도시 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

마. “매매체결 가능성”이란 주문이 집행되어 실제로 매매체결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회사별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세부 기준은 Ⅱ.3.나.2) 신규 물량 조성 주문 참조)

Ⅱ. 최선집행 세부 기준

1. 적용 대상 증권의 범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과 같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회사의 대상 집행시장

가. 집행시장의 선택
회사는 사전에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거래소 중 하나 또는 일부 집행시장을 선택(제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 시장을 선택(제외)한 사유를 최선집행기준에 명시한다.

나.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1) 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할 때마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배분할 시장을 판단한다.
2) 일부 집행시장에서 접속매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할 시장의 선택은 회사의 운영방침을

따른다.

3. 회사의 최선집행 세부기준

가. 최선집행기준 고려사항

회사의 최선집행 의무는 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나'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이행한다.

나. 최선집행기준[정규시장(KRX)/메인마켓(NXT)]

1)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가) 1순위 : 가격(잔량)

나) 2순위 : 총비용

다) 3순위 : 회사 선정 거래소

※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의 최선집행

공개된 호가를 기준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의 범위 내 더 유리한 가격으로의 체결을 목표로 한다.

(가격(잔량)) 공개호가의 가격(잔량)을 기준으로 고객이 지정한 가격의 범위 내 가장 유리한 호가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로 주문한다.

(총비용)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호가의 잔량이 동일할 경우 총비용이 작은 거래소로 호가를 제출한다.

(회사 선정 거래소) 상기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회사 선정 거래소로 주문한다.

※ (회사 선정 거래소)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은 시장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 회사는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의 경우 체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주문을 두개의 거래소로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

가) 1순위 : 매매체결 가능성

나) 2순위 : 회사 선정 거래소

※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의 최선집행

(매매체결의 가능성) 투자자의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자방 및 타방 공개호가의 잔량 및 누적 잔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 선정 거래소) 회사의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은 시장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에 대해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거래소로만 주문을 집행할 수 있으며, 시장가 주문이 신규 물량 조성 주문인 경우 회사 선정 거래소로 집행한다.

3)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과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상기 나의 1)과 2)의 조건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 기준을 적용한 후 신규 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 기준을 적용

4) 시간대별 최선집행 기준

시장구분	호가접수시간	거래방식	호가 제출 거래소
프리마켓	08:00 ~ 08:30	NXT 접속매매	NXT
	08:30 ~ 08:50	NXT 접속매매, KRX 단일가	NXT
	08:50 ~09:00:30	NXT 휴장	KRX
메인마켓	09:00:30 ~ 15:20	NXT/KRX 접속매매	SOR
	15:20 ~ 15:30	NXT 휴장	KRX
애프터마켓	15:30 ~ 15:40	NXT 단일가매매	NXT
	15:40 ~ 20:00	NXT 접속매매	NXT

다. SOR(Smart Order Routing) 주문 처리시 유의 사항

※ 'SOR'이란 투자자의 주문지시를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맞추어 주문이 집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투자자는 온라인채널 또는 직원을 통한 주문 시 거래소(KRX, NXT)를 선택하여 지시하거나 SOR을 지시하여 주문할 수 있다.
2) 온라인채널에 따라 투자자가 직전 선택하여 지시한 거래소를 주문화면의 디폴트 거래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투자자는 주문화면에서 언제든지 최선집행(SOR) 및 거래소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다.
3) 회사의 최선집행은 공개호가를 기준으로 집행되며, 집행된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한 시점의 호가 및 호가잔량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회사는 최선집행 판단 시점의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4) 회사가 최선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된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의 거래정지 등의 사유발생으로 주문 거부 시 주문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5) 투자자의 정정/취소 주문의 SOR 적용시 최선집행기준에 의해 원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수량의 집행거래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주문의 해당 수량 취소주문 처리 후 정상적으로 취소처리가 완료된 이후 변경 거래소로 신규 주문을 처리한다. 다만, 원주문의 취소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시점에 체결 등의 사유로 주문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SOR을 이용한 정정 주문시 원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집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규 주문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정정 주문은 원주문의 취소만 실행되고 주문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주문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집행시장 또는 회사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SOR 시스템의 장애 및 집행시장인 거래소의 장애 발생시 기 집행된 주문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7)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공개호가의 장애 발생 시 SOR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공개호가에 의한 최선집행

판단결과로 집행된 주문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8) SOR 주문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SOR 주문을 제한하거나 회사가 선정한 거래소(프리마켓: NXT, 메인마켓: KRX, 애프터마켓: NXT)로 집행할 수 있다.

9) 회사는 시장가주문의 최선집행시 투자자의 체결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거래소(NXT)로 집행 후 미체결 잔량의 취소분은 한국거래소(KRX)에 신규주문으로 재처리할 수 있다.

10) 기타 최선집행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별첨〉 3에서 정한다.

라. 거래소정정(거래소의 변경) 및 리밸런싱

1) 거래소정정 및 리밸런싱은 주문단가의 변경 없이 주문이 집행되는 거래소만 변경하는 주문으로 투자자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및 호가유형에 한하여 일부 온라인채널 및 직원을 통해 지시할 수 있다.

2) 거래소정정 시 회사는 투자자가 지정한 거래소로 변경하여 집행한다.

3) 원주문의 취소접수 후 취소처리가 정상 완료된 경우 변경할 거래소로 신규주문을 처리한다.
다만, 원주문의 거래소에서 취소주문에 대한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 변경을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원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신규주문을 집행한 거래소에서 주문을 거부할 시 원주문의 취소로 주문이 종료될 수 있다.

4) 리밸런싱은 최선집행(SOR)을 재처리하여 주문을 집행한다.
다만, 최선집행 기준에 의한 판단결과가 원주문의 상태 유지인 경우 주문은 재집행 되지 않는다.
또한 상기 다. SOR(Smart Order Routing) 주문 처리시 다.4)~7)에서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거래소정정 및 리밸런싱은 KRX 및 NXT 양거래시장이 모두 접속매매 일 때 제공하며, 자세한 안내 사항은 〈별첨〉 3에서 정한다.

Ⅲ.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

1. 최선집행기준 적용 일반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가. 회사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 지시 받은 집행 방법 (1회성 주문 시 거래소지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고려사항 일반원칙의 순위 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1)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및 유의사항 (영 §66의2② 단서)
회사는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Opt-Out)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 (투자자 지시 우선 원칙) 투자자 주문처리 지시 내용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과 상이하더라도 투자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주문 처리한다. 다만, 투자자 별도 지시를 위해서 투자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사전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투자자 지시 유효기간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별도 지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3개월간 유효하며, 회사는 투자자 지시내용의 효력 만료 1영업일 전까지 만료 예정사실 안내를 포함하여 총 3회 이상 동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투자자가 설정한 기간 내라 하더라도,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지시의 효력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Ⅱ.3.나.의 최선집행기준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유효기간 종료 때와 동일하게 최소 3회 이상 상기 사실을 투자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나.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집행 : 당해 계약 등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다. 거래약관 또는 계약 및 별도 약정 등에 있어 집행 방법을 특정하는 거래 : 당해 집행 방법

라. 회사와 투자자의 사전협의 후 집행이 필요한 주문(타사공매도, 미예탁주식매도, 질권매도 등): 회사가 선정하는 방법

마. 기타 최선집행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은 〈별첨〉1과 2에서 정한다.

2. 최선집행기준 적용 특별 예외

집행시장 또는 회사의 시스템 장애, 시장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결과 책임 미귀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문 결과의 책임은 회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가. 회사의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자가 요청한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어진 환경내 주문시점 최선으로 집행한 경우

나. 거래소 장애로 인한 주문의 거부/취소, 지연, 체결지연, 공개호가 오류에 의한 최선집행 등의 경우

Ⅳ. 그 외 최선집행의무에 관한 사항

1. 최선집행기준 점검 및 공표 의무 (법 §68③, 영 §66의2③, ⑤)

가. 회사는 3개월마다 II.3.나. 최선집행기준[정규시장(KRX)/메인마켓(NXT)]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 기준의 내용이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을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한다.

나. 회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공표하거나 또는 가.에 따라 그 변경 사실(변경 이유를 포함한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설명서 교부 의무 (법 §68④, 영 §66의2⑥)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는 경우 미리 문서 또는 전자문서(온라인 교부, 문자, 알림톡, 이메일 등) 등의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사전 계좌개설시 또는 매매에 관한 주문을 수취 전에 이미 해당 설명서(Ⅱ.3.나의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서를 말함)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또한 Ⅱ.3.나 최선집행기준[정규시장(KRX)/메인마켓(NXT)] 이외의 부분이 변경된 경우 Ⅳ.1.나.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3. 증빙 제공 의무 (영 §66의2④, 규정 §4-17①)

회사가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주문이 그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문자, 알림톡, 전자우편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나. 서면등에는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1) 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 · 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2)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3)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다. 투자자가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나.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등을 제공한다.

4. 기록·유지 의무 (영 §66의2⑦, 규정 §4-17②)

회사는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10년 이상 기록·유지한다.

〈별첨〉

1. Ⅲ. 최선집행기준의 적용 예외의 1.마. 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예외처리 후 별도 일정으로 반영한다.
   가. ARS를 활용한 주문: '25년 신ARS 차세대 시스템 도입 후 반영
   원주문이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소 지정 주문이거나 SOR주문인 경우 ARS를 활용한 정정/취소 주문은 제한 된다.
   나. 제휴사주문(증권통, 카카오, 제휴 대출서비스(스탁론) 등): 제휴사의 시스템 반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반영
   다. 제휴처가 회사의 온라인채널에 제공하는 특화주문(X-Ray)은 제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반영
   라. 서버자동주문, 주식시간/수량분할주문, 모바일WTS(간편주문 등) 화면은 시스템 반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반영

2. 다음 해당하는 주문화면의 경우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예외처리 한다.
   가. 복수계좌 주문, 복수종목 주문, 일괄정정 주문, 일괄취소 주문
   주문화면 기능의 복잡성 및 주문의 처리 속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 적용을 예외처리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문화면을 이용하지 않는 주문으로 FIX주문(MALT) 등
   다. Pair Trading, 바스켓 차익주문(MALT)은 양거래소의 현물 호가가 상이하여, 베이스조건을 맞출 수 없으므로 한국거래소(KRX)로 주문한다.
   라. 미니원장(MALT)은 특정기관용으로 고객의 별도 지시를 받아 한국거래소(KRX)로 발주한다.
   마. 예약주문은 한국거래소(KRX) 및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소 중 투자자가 지정하여 주문한다.

3. II. 3.다.10) 및 II. 3.라.5)에 따라 〈별첨〉 3에서 정하는 `기타 최선집행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선집행기준과 관련한 기타 안내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최선집행기준'에 게시